구로구 개봉2동 공고 제 2024 – 16 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공시송달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신규)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2. 공 고 기 간 : 2024. 5. 3. ~ 2024. 5. 24.
3. 공고대상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공고사유
1	김*재	07.04.02	구로구 개봉로19길 123	2024.05.01. ~ 2025.04.30.	송달 불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 반송)
2	김*경	07.04.12	구로구 개봉로20길 6	2024.05.01. ~ 2025.04.30.	송달 불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 반송)
3	홍*은	07.04.21	구로구 남부순환로95길 88	2024.05.01. ~ 2025.04.30.	송달 불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 반송)
4	신*은	07.04.22	구로구 개봉로15길 58-9	2024.05.01. ~ 2025.04.30.	송달 불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 반송)
5	박*수	07.04.17	구로구 개봉로20길 6	2024.05.01. ~ 2025.04.30.	송달 불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 반송)

4. 신청장소 :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 가능

   ※ 23.1.12부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전국 어디서나 가능함.

5. 발급안내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신청인인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
      가)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
      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이장의 확인
      다)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3.5㎝×4.5㎝)을 제출 다만 제출한 사진이 본임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4)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등이 직접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 다만 신청인이 원하면 등기 우편료를 부담하고 우편으로 수령 가능

※ 위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 권 혜은 문의전화 : 02-2620-7274)

2024년 5월 3일

개 봉 제 2 동 장